



의 안 번 호	제00호
회 의 연 월 일	2026. 9. 21. (제596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6. 9. 11.

인사담당관, 인사기획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치안환경의 복잡·전문화에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우수한 성과와 공적에 상응하는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 특별승진 신설(안 제4조제3항, 안 제37조제3항제7호, 안 제38조제6호)

특진 범위를 ‘총경’까지로 확대하고 공적 항목으로 ‘그 밖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

나. 경정 특별승진 요건 확대(안 제38조제2호)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은 범인검거·인명구호·비상사태 진압 분야에 한정, 다양한 분야의 우수 공적자에 대한 승진 기회 부여를 위해 기존 경감까지만 가능했던 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 특별승진을 경정까지 가능토록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정”을 “총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을 “총경·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으로, “경정으로의 승진임용”을 “총경·경정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제2호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7조제3항제7호의 경우: 총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u>경정</u>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총경</u> ----- ----- ----- ----- ----- ----- ----- ----- ----- ----- -----.
1. <u>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u> 예정 인원: <u>경정으로의 승진임용</u>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	1. <u>총경·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u> --- <u>총경·경정으로의 승진임용</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② (생략)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 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생략) 2.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u>경감</u>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 5. (생략) <u><신설></u>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경정</u> ----- ----- 3. ~ 5. (현행과 같음) 6. <u>제37조제3항제7호의 경우: 총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19